

장백산천지

제128기

2013년 11월 5일

화요일

공산마교에 대해 똑똑히 알다

나는 ‘9평’을 본 후 공산당의 살인의 역사, 광시(广西)에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참극을 빚어낸 역사를 보고 너무나 놀랐다. 이런 죄악은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 파룬궁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이런 사람을 질식시키는 죄악은 최근 2006년부터 비로서 폭로되기 시작했다. 바로 당신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동포, 우리 중화 민족의 자손들이여, 선량한 무고한 백성들이 연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처럼 인성을 완전히 상실한 참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정당이란 말인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피비린내 나는 마교(魔教)이다! 공산마교가 존재하는 한 당신에게 무슨 보장이 있단 말인가? 그러기에 2002년 구이저우(贵州)에서 ‘중

국공산당망(中国共产党亡)’이란 신기한 장자석이 발견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때는 바로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죄행이 대규모로 상승할 때이다. 하늘이 이 사당(邪黨)을 멸하려 한다! 하늘이 진작에 이 사당을 멸했어야 한다! 나는 사당의 그 죄악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꼭 천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된다.

공산당은 사탄교의 마귀이다. ‘공산당선언’에서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령에서 빛나고 있다.’라고 한 이 한마디가 그의 내력을 알려주고 있다. 몇십 년의 중공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가 있는 곳마다 영원히 공갈, 전란, 기황, 독재, 도살과 공포가 동반해 중화민족과 전 인류를 심중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9평’은 전반적으로 중공이 왜곡한 중국의 근대사

의 본래의 면모를 밝혀 놓아 이 십악이 구전한, 민족을 해치고 있는 백골정의 허울을 벗겨내 중화민족에게 재생의 새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탈당, 탈단(退团), 탈대(退队) 해야만 자기를 구하고 중화를 구할 수 있다. 신당인 텔레비전 방송국의 ‘9평 공산당’은 중공이 부인 할 수 없는 역사의 장면으로서 진실한 역사의 재현이다. 공산당은 바로 사탄교가 정당의 탈을 뒤집어 쓴 마교이다. 우리가 어찌 마교의 통치를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반드시 중공마교를 해체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인식에 의해 나는 중공의 당단대 사교조직에서 탈퇴하여 당당한 중국인으로 될 것을 성명한다.

글/ 장쑤(江苏) 쑐샹(锁祥)

방광암이 바로 이렇게 없어지다니?

말해 정말 신기하게 불치병이 완쾌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당신가족 다섯 사람이 모두 성심으로 이 아홉 글자를 읽으면 꼭 팬찮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내가 사부님의 설법 강의와 ‘선악 일념 간(善惡一念間)’을 당신 부친에게 듣게 하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아,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라고 했다.

나는 병원에 가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리바오의 부친에게 주며 성심으로 정중하게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를 읽으면 꼭 나아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처음에 그는 반신반의했으나 진상을 알리니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후 병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은 매일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를 읽었고 리바오의 모친은 잘 기억하지 못하여 리바오가 아홉 글자를 종이에 써서 그대로 읽게 했다! 리바오의 부친은 매일 사부님의 설법을 듣고 “선악 일념 간”을 읽으며 사부님의 자비에 푹 빠지게 됐고 대법의 신기함을 감수했다! 이렇게 며칠 후 병리결과가 나왔는데 다만 보통의 종양이었다. 리바오 일가는 저도 모르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대법의 신기함을 감수했다. 그러나 의사는 병리화면이 그리 똑똑하지 않다면서 그 결과를 매우 의심했고 다시 검사하자고 했다. 리바오가 불안해하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대법을 선하게 대

하는 일념으로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 있어 무사하다! 다만 당신들이 계속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를 성심으로 읽고 대법의 신기함을 믿으면 반드시 어떤 일도 있을 수 없다!” 그와 가족은 계속 성심으로 정중하게 읽으면서 최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허, 너무 신기합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아버지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도 모두 불가사의하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지금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바오는 희색이 만연하여 “나는 집에 돌아온 후 샤워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은 뒤 녹음을 틀어놓고 사부님께 절을 백 번했습니다! 이 파룬따파는 너무 신기합니다! 파룬따파는 정말 좋습니다!” 그는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외쳤다. 나도 듣고 매우 기뻤으며 이는 진상을 안 중생이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은혜에 감격한 것이다!

리바오와 그의 부친의 신기한 경험을 통해 진상을 알지 못하는 중생의 선량한 본성을 환기시키기를 희망한다. 전 세계 선량한 대중이 모두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를 성심으로 정중하게 읽을 수 있고 중공사당, 일언당(一言堂)의 죄를 뒤집어씌우며 모함하는 말을 듣지 말며 일의 진상을 알고 생명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파룬따파는 정말 신기하다! 파룬따파는 정말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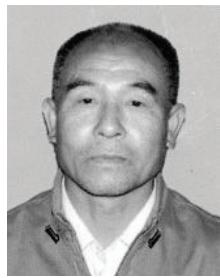
[밍후이왕] 리바오(李寶)(가명)는 금년에 35세로 사람이 선량하고 천진함이 얼굴에 가득하다. 나는 그와 함께 일하는데 대법과 연분이 있어 진상을 알고 3되어 했다. 또한 사부님의 광저우 설법을 보고 대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최근 그의 부친에게 생긴 일을 통해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했다.

최근 리바오의 부친은 매우 괴로운 증세로 진(鎮)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전열선염이라 하였고 약 처방을 받아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누가 알았으랴, 한의사가 준약을 마신 후 괴로움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하기만 했다. 현(縣)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한 결과 전열선염이 아니고 방광에 무엇이 자라고 있다고 했고 리바오는 작은 수술을 하여 그것을 떼어내면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수술과정에서 그것이 매우 큰 것임이 발견되었고 꺼내보니 걸모습이 유채꽃 같았다. 의사는 “방광암”으로 진단하였으나 다시 병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에 리바오의 부친은 큰 충격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온 가족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리바오가 출근하여 내게 이 일을 말했는데 그의 낯빛은 누렇고 아주 여위었다. 나는 그에게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를 말하면 꼭 팬찮을 수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했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파룬따파하오’를



지린 주타이 노동교양소, 장칭쥔을 살해하고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해



(밍후이왕통신원
지린보도) 2013년 4
월 하순, 길림성에서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사무실'
에서는, 성 사법국을
시켜 세 사람을 연변
주(延邊州) 사법국에

파견해 가라고 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2010년 10월에 주타이(九台) 인마허(飲馬河) 노동교양소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장칭쥔(張慶軍)의 아들 하이보(海波, 31세)를 연길주 사법국으로 데려가도록 했다. 파견되어 온 사람이 하이보에게 “돈을 줄 테니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합시다.(사망자의 둘째 남동생이 10만 위안의 돈을 주면 결말을 짓겠다고 말했다고 했다.)”라고 말하고, 하이보에게 서명하기만 하면, 즉시 장칭쥔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배상금을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올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사법국에서 온 사람이 하이보의 부친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와서 일을 얼버무리려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이보는 이 말을 듣고 영영 소리 내어 울면서, 이들의 제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는 부친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원했다! 파견되어 온 사람은 이 상황을 보더니 “당신은 집에서 잘 생각해 보시오.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면 우리에게 전화 주시오.”라는 말을 남겼다. 8월, 전 지린 주타이 인마허 노동교양소(지금은 마약 중독자 재활원으로 고쳤음)에서는 하이보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다른 요구가 있는지를 물었다. 하이보가 “50만 위안을 꺼내놓은 뒤에 다시 이야기 합시다.”라고 말하자, 노동교양소의 사람은 “요구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협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64세인 장칭쥔 노인은 도문(圖們)시 석

현(石峴)진 파룬궁수련생이다. 2010년 10월에 주타이 인마허 노동교양소로 납치당해 7일 만에 박해로 사망했다. 현재 시신은 여전히 장의사의 냉동고 안에 놓아두고 있는데, 매일 노동교양소에서 시신방치비용(停屍費) 백 위안을 감당하고 있다.

장칭쥔은 도문시 석현진 10위(委)에서 살고 있다. 장칭쥔과 아내 장수화(張淑華)는 예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일 년 내내 병고 속에서 나날을 보내 생활이 고생스러웠다. 운이 좋게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었고, 엄격하게 파룬궁의 ‘찐, 쌈, 런(眞, 善, 忍)’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었으며, 매순간 자신을 엄격하게 요구했다. 이로부터 신체가 건강하고 튼튼해졌으며, 생활이 즐거웠다. 그리고 근무지에서도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사람 됨됨이가 성실하고 선량했다.

하지만 바로 이처럼 훌륭한 부부는, 1999년 7월부터 중공이 파룬궁 ‘찐, 쌈, 런’에 대해 박해를 시작한 아래, 여러 차례 현지 중공 사악한 당 정부 인원과 경찰들의 불법 강탈, 납치, 불법 감금 등의 박해를 당하고,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불법 강제 노동교양을 당했다. 그리고 노동교양소에서 비인간적인 학대와 고문박해를 당했다. 노동교양소에서 석방돼 나온 요 몇 년 동안에도 여러 차례 불법 체포, 가택 수색, 구류를 당했으며, 세뇌반에 강제 감금되어 ‘찐, 쌈, 런(眞, 善, 忍)’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려는 신앙권리를 박탈당했다.

2010년 9월 10일, 도문시 석현진의 경찰 두 명(그 중 한 사람은 김학문-金學文, 조선족, 20여 세)은 속임수를 써서 막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장칭쥔을 경찰차에 실어 쟁лин촌(松林村) 양로원에 위치한 세뇌반에 감금하고 박해를 감행했다. 국보대대, 정법위 및 파출소, 가도 등 몇 십 명 악인들은 각종 강제적인 방법으로 ‘찐, 쌈, 런’ 신념을 포기하라고 장칭쥔을 펍박했다.

열흘 후, ‘610’은 지시를 내려 장칭쥔을 세뇌반에서 시 공안국 안산(安山) 구치소로 옮겨서 감금하고, 박해를 가했다. 중공

악인은 또 각종 방법으로 장칭쥔에게 ‘찐, 쌈, 런’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협박했다. 뒤따라 ‘610’은 거리낌 없이 장칭쥔에 대해 노동교양박해를 감행했다. 시 국가보안대대 부대장 저우훙(周宏)이 나서서 10월 22일에 장칭쥔을 극히 악명이 높은 주타이 인마허 노동교양소로 압송해 박해를 가했다.

단 7일 만에 장칭쥔은 주타이 노동교양소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장칭쥔의 가족은 노동교양소로 와서 장칭쥔의 머리 부위에 상처가 있음을 보았다. 노동교양소 측은 장칭쥔은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했는데, 정상적인 사망에 속한다고 말했다. 가족이 노동교양소에서 관련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또 당시 당직을 선 경찰, 의사, 그리고 장칭쥔과 함께 숙박한 사람을 만나겠다는 요구를 제출하자, 노동교양소 소장은 가족에게 이런 권리가 없다며 노동교양소에서는 다만 검찰에게 보일 수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가족이 22일부터 30일 까지의 장칭쥔에 대한 감시 녹화 기록을 보자고 요구하자, 노동교양소에서는 감시 녹화기가 고장이 났다고 대답했다.



〈약도에 의해 장칭쥔의 눈썹꼬리와 광대뼈 부위가 상해를 입은 흔적〉

사진은 장칭쥔 가족이 장의사가 없는 기회를 틈타 매우 급하게 사진기로 찍은 사진이다. 가족이 초점 거리, 노출(曝光) 시간과 구도를 잘 맞추지 못해 사진이 희미하다. 목과 몸 측면의 흰 안개 상태로 된 부분은 시신을 놓은 냉동고 안의 얼음과 서리이다. 원 얼굴 위의 상흔은 화장 크림분에 의해 감추어졌었는데, 몸과 얼굴 위의 얼음과 서리를 녹이기 위해 가족은 시간을 끌었다. 화장 크림분이 얼음물이 녹을 때 함께 죽죽해지면서 녹아내렸는데, 그제야 상흔이 드러났다.

중공의 죄악과 본질을 드러낸 ‘법제교육센터’

[밍후이왕] 지금은 중공(중국공산당)이 사악하다고 말하면 대부분 중국인은 모두 인식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은 중공 허위선전의 영향으로 일시 중공의 본질을 분명히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아주 잘 대표할 수 있는 괴물인 ‘법제교육센터’를 보기로 하자.

파룬궁수련생의 반(反) 박해와 국제 사회의 비난으로 중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노동교양소를 철폐하고 노동교양 제도를 폐지한다는 가식을 부렸다. 그래서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분명히 간파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중공에 또 환상이 생겼다. 그렇지만 중국에 지금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괴물인 ‘법제교육센터’는 오히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창궐해지고 있다.

우리는 먼저 ‘법제교육센터’란 어떤 것인지 보기로 하자. ‘법제교육센터’를 ‘법제양성센터’, ‘법제교육소’, ‘법제교육기지’ 등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는 교육부에서 꾸린 무슨 학교인 줄로 알기 쉽다. 사실 그것은 전문 파룬궁수련생을 폭력적으로 세뇌하는데 쓰는 검은 감옥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세뇌반’이라고 부른다.

1999년 중공 괴수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발동한 후 세뇌반은 전국 각지에 대량 생겼다. 성(省)에서 꾸린 것, 시(市)에서 꾸린 것, 구(區)에서 꾸린 것, 주민센터(가도)에서 꾸린 것, 또 직장에서 꾸린 것 등등이다. 그것을 괴물이라 함은 그것을 직장이라고 하자니 편제가 없고, 기구라고 하자니 명확한 주관 당국이 없고, 감옥이 아니라고 하자니 감옥보다 더 사람을 괴롭히고 구속하며, 학교라고 하자니 공부는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제라는 허울을 쓰고 전문적으로 불법 행위만 한다. 그것은 사람을 붙잡는데 아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사람을 수감하는데 재판이 필요 없으며 또한 시간제한이 없고 고문을 해도 상관하는 사람이 없고 또

무슨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극한을 ‘연구’한다고 한다.

그것을 ‘파쇼 강제수용소’라 함이 비교적 적합하다. 그것은 공산당의 9대 사악요소인 사악, 기만, 선동, 투쟁, 약탈, 깡패, 이간, 소멸, 통제를 가장 잘 체현했다.(구체적인 논술은 밍후이왕 2012년 8월 10일 문장 『후베이성 ‘파쇼강제수용소’ 비밀 폭로』를 참조)

이른바 ‘법제교육센터’는 법률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표면과 배후가 서로 다르다. 각급 당위원회, ‘610’(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조직)이 조작하는데 무법천지로 무슨 행위나 다 한다.

이른바 ‘610사무실’은 중공 장쩌민 일당이 1999년 6월 10일 파룬궁 박해를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불법 조직으로 나치의 ‘게슈타포’와 비슷하다. 각지 ‘610’ 불법인원은 ‘법제교육’이란 간판을 내들고 세뇌반을 사사로이 불법 설립해 현지 파룬궁수련생 및 노동교양소와 감옥에서 형기가 찬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해서는 그들이 마음을 어기고 신념을 포기한다는 태도표시를 하도록 협박하는데 이른바 ‘전향’이라고 한다.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데 ‘610’ 악도들은 오히려 그들을 세뇌반에 납치해 강제로 ‘전향’을 강요하는데 보는 바와 같이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邪教)다.

세뇌반이란 문화대혁명 당시 꾸렸던 이른바 ‘학습반’의 재현이다. 그때는 정치적 적을 타격하는 한 가지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중공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도구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법률의 기본 원칙과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보기로 하자.

1. 헌법을 위반

이는 두 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첫째는 헌법규정의 법치 원칙(제5조)과 인권보장 원칙(제33조)을 위반했다. 둘째는 직접 헌법규칙을 위반했다. 헌법에는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36조, 中華인민공화국 국민(公民)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이든 국민이 종교를 신앙 혹은 종교를 신앙하지 않도록 강제하지 못하며, 종교를 신앙하거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경시하지 못한다.

제37조, 中華인민공화국 국민의 인신 자유는 침범 받지 못한다. 어떠한 국민이든 검찰원 허가나 결정 혹은 법원의 결정 없이 아울러 공안기관의 집행으로 체포하지 못한다. 불법구류와 기타방법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함을 금지하며, 국민의 몸을 불법 검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中華인민공화국 국민의 인격 존엄은 침범하지 못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민에 대한 모욕, 비방과 모함, 무고함을 금지한다.”

‘법제교육센터’는 폭력적인 세뇌반으로서 국민의 신앙과 자유를 엄중하게 침범했으며, 어떠한 수속절차도 없이 국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했는데 어떤 사람은 길게는 수년에 달한다. 이는 체포보다 더욱 심각하게 국민의 인신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파룬궁수련생을 마음대로 치욕을 주고 비방했으며 고문으로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2. ‘입법법’이 규정한 법률보류원칙을 위반

‘입법법’ 제8조 제5항에 규정했다. “국민에 대한 정치권 박탈,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은 법률만이 제정 할 수 있다.” 쓰촨 쪽양(資陽)시의 ‘법제교육센터’는 이미 일부 파룬궁수련생을 3년이나 수감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계속 수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당연히 법률로 규정해야 하지만 ‘법제교육센터’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무법천지다.

3. 정당한 법률 절차를 위반

이는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법제교육센터’에서 장기적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한 이런 처벌은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 자체가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둘째는 집행 중 상위 직장에서 정당한 절차를 크게 위반한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을 ‘법제 교육센터’에 보낼 땐 흔히 ‘610’ 혹은 모 당위, 모 직장 조직인이 강제식 납치로 집행한다.

4.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범

주로 국민의 신앙자유, 사상자유, 인신자유, 심지어 생명권, 표현권을 침범했다. 많은 파룬궁수련생은 ‘법제교육센터’에서 박해로 사망했고, 사망하지 않은 파룬궁수련생이 당한 모욕, 고난을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렵다.

5. 국제적 의무 위반, 국제법 위반

‘세계인권선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5조, 어떤 사람에게든 고문 혹은 잔인하고 인도적이지 못하거나 치욕적인 대우나 형벌을 가하지 못한다.

제9조, 어떤 사람이나 함부로 체포, 구금 혹은 추방하지 못한다. 제10조, 사람마다 완전히 평등하게 법정에서 독립적이고도 편향적이 아닌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가 제출한 형사소송을 판정해야 한다.”

‘국민권과 정치권 국제공약’은 ‘세계인권선언’ 제10조에 대해 세분화 했다. 중국은 일찍이 1998년에 ‘국민권과 정치권 국제공약’에 정식 서명했다. ‘국민권과 정치권 국제공약’ 제14조 제1조목에는 명확히 규정했다. “사람마다 법에 따라 설립한 합격된, 독립적이고 편파적인 행위가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심문받을 자격이 있다.” 정식 법정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지 못한다. 이는 국제 인권법의 기본 원칙이다.

“제18조, 사람마다 사상, 양심과 종교자유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그의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를 개변하거나 또 단독 혹은 단체, 공개적이거나 비밀적으로 교의, 실천, 예배와 계율로 그의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를 표시할 권리가 포함된다.”

중국은 유엔에 가입했으므로 유엔 협

장 및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및 내용을 자연히 인정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국제인권공약에 서명했으므로 유관 규정을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법제교육센터’는 또 세 가지 죄를 범했다. ‘반 인륜적죄’, ‘집단학살죄’와 ‘고문죄’다.

6. 형법을 위반

형법 제238조, ‘불법구금죄의 정의와 양형’ : 불법 구금 혹은 기타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 박탈한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단기징역형, 관제 혹은 정치권을 박탈한다. 구타, 모욕을 한 자에게는 중한 처벌을 가한다.

이러한 죄를 짓고 사람에게 중상을 초래한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사망을 초래한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언도한다. 폭력을 사용해 불구, 사망을 초래한자는 본 법 제234조 [고의상해죄], 232조 [고의살인죄]에 규정한 죄에 따라 처벌한다.

채무를 받기위해 불법 압수하고 타인을 구금한 자는 앞의 두 조목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앞 세 조목의 죄를 지으면 앞 세 조목의 규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내린다.

1999년 9월 16일 시행한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직접 수리한 입안 수사안건의 입안 표준에 관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불법 구금함에 아래사례 중의 한 가지가 있다면 입안해야 한다.”

- (1) 불법 구금시간이 24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자
- (2) 세 차례 이상 타인을 구금 혹은 한 번에 3명 이상을 구금한 자
- (3) 타인을 불법 구금하고 아울러 묶고, 구타하고, 모욕을 한 자
- (4) 불법 구금하여 사람을 불구, 사망, 정신이상에 걸리게 한 자
- (5) 빚을 받기 위해 불법 차압, 타인을 구금하고 상술한 사례 중의 하나가 있는 자
- (6) 사법 공무원이 무고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법 구금한 자

불법 구금죄의 사법해석

불법 구금죄란 구금, 독방에 감금하거나 기타 강제적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권리를 불법 박탈한 행위를 가리킨다. 불법 구금 죄가 침범한 객체는 타인의 신체 자유권이다. 이른바 신체 자유권이란 신체의 동정이 불법 교란을 받지 않음을 내용으로 한 인격권을 가리키는 것인데 법률 범위 내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유 권리다. 국민의 신체자유, 국민의 정상적인 사업, 생산, 생활과 학습의 보증이다. 신체자유를 잃으면 일체 정상 활동에 종사하는 가능성을 잃게 된다. 객관방면에 표현되는 것으로는 구금, 독방에 감금하거나 기타 강제적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권을 불법 박탈한 행위다. 범죄 주체는 일반 주체, 주관방면은 고의적이다.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인신권을 박탈한 행위는 이 죄를 구성하는 관건이란 점이다.

‘법제교육센터’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 괴물로서 사람을 붙잡는데 수속이 없고, 사람을 감금하는데 시간제한이 없으며 재판이 없고 해명할 기회가 없으며,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고 싶으면 어떻게 괴롭히는데, 불법구금죄, 납치죄, 고문죄, 고의상해죄를 구성했고 어떤 것은 이미 고의살인죄 등등을 구성했다.

불법적인 ‘법제교육센터’를 즉각 제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 인류의 모든 정의로운 인사와 양심을 가진 인사의 공동책임이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릴 것이다. 사악에 대한 정의의 심판은 곧 다가올 것인 바,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한 악도들은 오래지 않아 역사의 수치스러운 기둥에 못 박힐 것이다. 아직도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즉각 깨어나 침회하며, 아울러 공을 세워 속죄해야 한다. 지금은 당신들이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다. 그렇지 않다면 사악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될 때면 당신들에게는 다만 끝없는 고통 속에서 죄악을 갚는 뜻만 있을 것이다.

글/ 대륙 대법제자